

100-025. 鮮內검사국 정보-5

- 1939년 2월 15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평양·대구복심법원 검사장, 각 지방법원 檢事正, 함북지사, 조선군사령관, 조선헌병대사령관, 제19사단참모장, 제19사단법무부장, 羅南헌병대장, 관내 각 지청검사, 관내 각 경찰서장 및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앞으로 보낸 치안유지법 위반 등 피고사건 판결서 사본
- 문서 내용은 문서번호 100-024 鮮內檢事局情報, 농민운동사건의 예심청구 및 예심종결 결정에 이은 판결서로서 金日天 외 26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고된 형량별 집계를 보면 崔金龍이 징역 13년, 金日天이 징역 10년, 金禹諡, 千萬碩, 金洪權, 李相鳳이 징역 8년, 玄一松, 金浩鋒이 징역 7년 6월, 金南哲, 金二駿, 李金筍, 朴璣琿, 金日勳, 崔眞吉이 징역 7년, 全明樂, 許鳳鶴, 崔熙琰, 太旭星, 金得天, 朴龍準, 崔熙琮, 金鼎洛이 징역 6년, 韓錫金이 징역 5년 6월, 許泰鳳, 趙福萬, 崔京鳳, 金侑龍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밖에 징역 4년 6월이 1명, 징역 4년이 16명, 징역 3년 6월 이 14명, 징역 3년이 47명, 징역 2년 6월이 60명, 징역 2년이 79명, 징역 1년 6월이 14명, 징역 1년이 3명, 징역 6월이 3명으로 함께 266명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었다.
 - 범죄사실과 적용된 법령 및 사건 당사자는 1938년 鮮內檢事局情報 (문서번호100-024) 와 중복된다.